

『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2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12월 21일

제1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「국민제안규정」이 제정되어 2006. 6. 4부터 시행되고 있으며, 「공무원제안규정」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-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제안의 범위 및 대상(안 제2조 내지 제3조)
 -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·행정서비스·행정문화·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함
 - 제안의 종류를 정하고,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, 단순 건의 등으로 정함
- 제안의 제출과 접수 (안 제4조 내지 제8조)
 - 제안의 제출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할 수 있음
 -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
- 제안심사위원회 운영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 - 접수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,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,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
 -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
 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
- 제안의 심사(안 제12조 내지 제15조)
 -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, 경제성,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,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·결정 통지
 -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·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
-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(안 제16조 내지 제21조)
 - 채택제안은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,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50~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함
 -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

-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및 승급 등 인사상 특전 부여
- 예산절감, 조세수입의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천만원 까지 상여금 지급
-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(안 제22조)
 -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「특허법」 등에 의한 직무발명일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함
- 채택제안의 사후관리(안 제23조 내지 제27조)
 -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,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함
 -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제안규정」 및 동규정 시행규칙
- 「공무원제안규정」 및 동규정 시행규칙
- 경북 도정혁신팀-4727(2007.10.10)호의 공무원제안 활성화 워크숍 개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

- 「국민제안규정」이 제정되어 2006. 6. 4부터 시행되고,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
-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만 운영되던 제안제도를 앞으로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7장 27조로 규정하면서
-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제안의 공동제출, 제안 접수 방법 및 보완에 관한 사항,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, 실무 심사위원회 설치운영, 제안 심사기준과 채택여부의 결정, 제안의 등급, 인사상 특전,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음
- 안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「구미시정조정위원회」가 대행하고,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, 창안등급의 결정,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음
- 안 제13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·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며
- 안 제17조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18조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, 노력상 등으로 구분하여 50만원 ~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고
- 안 제19조 예산절감, 조세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2건임

1) 안 제17조(인사상 특전)입니다

-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「공무원 제안규정」 제17조(인사상 특전)에는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“특별승급”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토록 하고
 - “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”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경우에는 “중앙우수 제안자”로 하되,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음
- 그러나 금번 안 제17조(인사상 특전)규정에는
 - 시 자체 채택 제안자에게 “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”의 인사상 특전을 바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에 있어서는
 - “특별승진”은 중앙부처와 같이 “중앙우수 제안자”로 하고
 - 구미시 자체 채택 제안자는 “특별승진”은 제외하고 “특별승급”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2) 안 제18조(부상금의 지급)입니다

- 「공무원 제안규정」 제19조(부상금의 지급)은
 - 채택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
 - “중앙 우수제안자”에 대하여는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, 노력상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50만원 ~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음

- 그러나 금번 안 제18조(부상금의 지급)은
 - 채택 제안자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하면서 부상금 한도액 30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
 - “중앙 우수제안자”에 적용하는 부상금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50만원 ~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- 채택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은
 -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상위법인 「공무원 제안규정」에 의거 최고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
 - 안 제18조에 의거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축소하면서 5개 등급을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《 그러므로 》

- ① 안 제17조 인사상 특전에 있어서 채택 제안자에 대하여 “특별승진”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와
- ② 안 제18조 부상금의 지급은 최고 30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등급을 함께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